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경남신용보증재단 준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단의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준비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팀2023-1395호 ‘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요청(고성군)’

2. 출연의 법적 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3.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

4. 신용보증지원 방법

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융자규모: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용)

5. 2024년 고성군 출연 요청액 산정기준

(기준일자 : '23.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0))

구분	총보증공급 (25%)		보증잔액 (25%)		대위변제 (25%)		재정자립 (10%)		GRDP (10%)		사업체수 (5%)		비율 합계	'24출 연배분 1차	최 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합계 (경남)	141,218	25.0	26,320	25.0	3,691	25.0	261.06	10.0	1,108,461	10.0	444,636	5.0	100.0	200	205
고성군	1,176	0.2	314	0.3	47	0.3	9.36	0.50	22,929	0.2	7,579	0.1	1.62	3.25	3

* 24년 출연 배분액은 **최소금액임**. 출연액에 비례(10~12배)하여 시·군 정책자금이 지원되므로 자금확대 필요시
출연배분액 이상 출연 가능. 출연배분액 초과분 15배수 적용

6. 고성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

구분	'24년 배분액	100% 출연시		70%이상 출연시		70%미만 출연시	
		출연액 (100%기준)	12배	출연액 (70%기준)	11배	출연액 (50%기준)	10배
고성군	3	3	36	2.1	23.1	1.5	15

* 출연 배분액 초과 출연분에 한해 운용배수 15배수 적용

7.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금300,000천원

※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1년-300,000천원 / 2022년-300,000천원 /
2023년-300,000천원

8. 시·군별 출연금 현황 및 관련 현황·법규 : 붙임 참조

시·군 연도별 출연금 출연 현황

구 분	합계	'15년 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585.7	24	14	18.5	25	37	95.5	121.7	119.5	130.5
창원시	78	6	1	3	5	8	11	14	10	20
김해시	71	1	2	2	2	3	11	15	15	20
진주시	77.5	2	1	1.5	2	3	8	20	20	20
양산시	44.5	1	2	2	2	3	4.5	12	10	8
거제시	89.5	6	2	2	2	2	24.5	17	17	17
통영시	28.5	2		1	1	3	6	5.5	5	5
사천시	29	1	1	1	1	2	4	6	6	7
밀양시	29			1	1	1	4	6	10	6
함안군	24	1	1	1	1	2	3	5	5	5
거창군	18	1		1	1	2	3.5	2.5	3	4
창녕군	15.5		2		1	1	2.5	3	3	3
고성군	15.5		1	1	1	1	2.5	3	3	3
남해군	13.5			1	1	1	1.5	3	3	3
산청군	11.2		1		1	1	2	2.2	2	2
함양군	11	1			1	1	2	2	2	2
하동군	10			1		1	2	2	2	2
합천군	11	1			1	1	2	2	2	2
의령군	9	1			1	1	1.5	1.5	1.5	1.5

○ 고성군 보증공급 현황

- 설립('96.6) 후 고성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 보증금액은 약 1,094억원
-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147억원(총 440억원) 보증공급 지원
(‘22.12.31. 기준, 단위 : 개, 억 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월~2018년	3,062	563.5	45	22.6	3,107	586.1
2019년	351	65.6	3	1.5	354	67.1
2020년	1,117	179.9	1	0.3	1,118	180.2
2021년	562	100.7	6	13.2	568	113.9
2022년	845	145.2	4	1.1	849	146.3
합 계	5,937	1,054.9	59	38.7	5,996	1,093.6

○ 고성군 대위변제 현황

- 설립('96.6) 후 고성군 소재 기업의 누적 대위변제순증(발생) 금액은 약 42억원
- 코로나19 이후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지속적 부실 증가 우려

(‘22.12.31.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6.6월~2018년	241	2,242	8	481	249	2,723
2019년	52	612	1	21	53	632
2020년	36	380	0	0	36	380
2021년	25	256	0	0	25	256
2022년	33	255	0	0	33	255
합 계	387	3,745	9	502	396	4,246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3. 금융기관의 출연금
- 4. 기업의 출연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